

의안번호	제47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월 일 (제 296 회)

**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0월 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7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0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정부의 「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」과 「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」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토록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토록 한다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6조(생략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/p>	<p>제1조~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률

- 제11조 (지역위원회)**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하에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<개정 2007.1.26>
- ② 시·도위원회 및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“지역 위원회”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
- 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